

2006. 9. 15(금)
제253회 정례회

심사보고서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06. 9. 7(목)

제253회 정례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6년 8월 28일

○ 회부일자 : 2006년 8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253회 충청북도정례회

○ 2006. 9. 7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가. 제안이유

○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 지방재정법의 인용조항 “16조의2”를 “제33조”로 변경
- 안 제3조제2항의 부위원장의 직무중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인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로 변경
-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자 기존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검토보고 요지

(교육사회전문위원 : 김재준)

-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05년 8월 4일 전면개정됨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 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 기존의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민주주의 결정방식에 부합되지 아니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이 전면개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나 지나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 번 호 | 23 |
|-------------|----|

제출연월일 : 2006. 8. .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지방재정법의 인용조항 “제16조의2”를 “제33조”로 변경함(안 제1조)
- 나. 부위원장의 직무중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인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변경함(안 제3조 제2항)
- 다. 의사결정에 있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하고자 단서 조항 삭제(안 제5조제3항)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재정법 제16조의2”를 “「지방재정법」 제33조”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한다.

제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재정법 제16조의2</u>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u>사고가 있을 때</u>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 <p>제1조(목적)----- 「<u>지방재정법</u>」 제33조----- ----- ----- ----- ----- -----.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제5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p> |
| | <p>-----. ---.<단서삭제></p>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0조 (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각각 본다.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